



업무협약서



본 협약은 청주대학교와 베스티안재단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력서(이하 “본 협약서”)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서는 청주대학교와 베스티안재단 상호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원칙)

1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상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제3조 (협력분야)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공동 연구 및 기술사업화 협력
2. 바이오의료분야 세미나, 학술회의,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
3. 베스티안 오송메디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 교류·협력
4. 교수 현장 연수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
5.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협조와 채용 정보의 공유
6. 양 기관 간에 협약된 제반규정에 의거 의료 편의의 제공
7.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

제4조 (비밀유지)

1. 양 당사자는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, 개인정보, 상대방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2.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에 의해 추진되는 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언론 홍보자료로 사용한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지식재산권 보호)

1. 양 당사자는 자료, 문서 및 인력 등의 교류에 있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
2.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은 개별 협정에 따른다.

제6조 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서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당해 협약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신의성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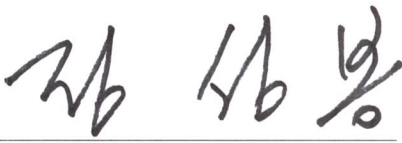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서와 그 내용을 명시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,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 월 27 일

청주대학교

총 장
정 성 봉



베스티안재단

이사장
김 경 식